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(사업소분) 감면

재무과 부과팀

055-860-3173

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민세(사업소분)을 감면하여
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함

감면대상

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,800만원
이상이면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
- 자본금 30억 이하인 중소기업

감면내용

- 2022년 8월 주민세(사업소분)의 100분의 50 감면
※ 주민세(균등분) 제외

공유재산 사용료 · 대부료 감면

재무과 재산관리팀

055-860-3153

코로나19 관련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소정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일정기간 인하하여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감면대상

-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'직접' 사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

감면내용

- 공유재산 사용료를 1천분의 50(5%) -> 1천분의 25(2.5%) 적용
※ 인하금액 최대 20백만원 한도

감면대상기간

- 2021. 1. 1.부터 2021. 12. 31.까지

신청기간

- 코로나19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

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

재무과 재산세팀

055-860-3463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'상생 임대인'에게 재산세를 감면 추진

감면대상

- 재산세 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(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말한다)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임대인

감면내용

- 재산세(건축물분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)에 대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75%까지 감면
※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 대상은 감면 제외

적용일시

- 2022년 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

신청기간

- 2022년 12월 31일까지